

선 람	기 관 의 장

제1025호 2018. 6. 29.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노티나무

훈 령

- 삼척시 훈령 제283호 삼척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 ----- 2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74호 개간사업시행계획 (변경) 승인고시 ----- 22
- 삼척시 고시 제75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 23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514호 삼척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7
- 삼척시 공고 제523호 삼척시 금고 지정 공고 ----- 33
- 삼척시 근덕면 공고 제6호 도로의 지정 공고 ----- 34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8년 07월 02일

삼 척 시 장

삼척시 훈령 제283호

삼척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

삼척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삼척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 35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삼척시소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간정보를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하는 삼척시와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이하“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장 공간정보 보안관리 체계

제3조(보안책무) ①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공간정보를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본청, 소속기관에서 보유한 중요공간정보 현황 파악 및 보안지

도·점검·감사·교육 등을 통해 보안상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4조(공간정보 보안담당관) ① 공간정보 보안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 1. 본 청 : 민원봉사과장
- 2. 소속기관 : 소속기관의 장

②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보안업무를 수행한다.

- 1. 공간정보 보안업무 계획 수립 및 시행
- 2. 공간정보의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
- 3. 공간정보의 보안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교육 및 감사
- 4. 공간정보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리
- 5. 그 밖의 공간정보 관련 보안업무

③ 본청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을 지휘·감독한다.

④ 보안담당관이 공석인 경우에는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공간정보심의위원회 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공간정보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1. 공간정보 보안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2. 제9조에 따른 공간정보의 세부 분류기준에 관한 사항
- 3.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공간정보의 공개 여부 및 공개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 4.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보호대책
- 5. 그 밖에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민원봉사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원봉사과장이 되며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간정보 업무 담당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

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의결 등)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안심의 요구 및 처리절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간정보 심의 요구자는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 1. 심의위원 및 간사
- 2. 각 실·과·사업소장
- 3. 읍·면·동장

② 위원회의 심의 방법은 회의 또는 서면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안을 심의 처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 시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공간정보 분류기준 및 관리절차

제9조(공간정보의 분류 등) ①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기본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며, 세부 분류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 1. 비공개 공간정보
 - 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 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
- 2.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이하 “공개제한”이라 할 수 있다)
 - 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 나.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 다. 기타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

는 공간정보

3. 공개 공간정보

제1호 내지 제2호 이외의 공간정보

② 공간정보를 분류할 때에는 세부 속성(칼럼)별로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로 분류하고 최고의 속성을 시스템의 대표 속성으로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공간정보의 취급)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만 취급 할 수 있다.

② 비공개 공간정보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중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공간정보 보안관리는 보안업무 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누설·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관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 1. 보관책임자 정: 업무담당과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람
- 2. 보관책임자 부: 업무 업무담당 또는 업무 담당자

제11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①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훼손·파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 가. 본청 : 업무담당과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람
 - 나. 소속기관 : 소속기관의 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람
- 2.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 위해방지
- 3. 공간정보자료(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포함)에 대한 접근권한 구분
 - 가. 부서 및 사용자별 ID·비밀번호 부여, 자료유형(레이어)별 접근권한 제한
 - 나. 작업범위는 소관업무에 따라 열람·출력·갱신 등으로 제한
 - 다. 열람은 필요내용에 따라 기본항목·전항목 등으로 구분
 - 라. 공간정보 취급자 이외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관리 책임자의 사전허가 후 이용

- 4.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 자료목록 작성 및 관리대장 비치
 - 5. 해킹 등 불법 접근 및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 6.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비치
- ② 전자매체에 수록된 공간정보 자료는 열람·전송·출력 등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공간정보 보호대책

제12조(공간정보유통망 관리) 공간정보 유통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 시 공간정보의 위·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공간정보유통망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 가. 본청 : 공간정보유통망 담당과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람
 - 나. 소속기관 : 소속기관의 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람
- 2. 방화벽 등 침입방지 및 감시시스템 설치·운용
- 3. 인터넷 등 외부망과 분리설치 및 해킹과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 4.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유통시 암호자재 사용 등 「보안업무규정」 제 21조에 따른 보안대책 마련
- 5. 공간정보 유통망에 대한 주기적 분석 및 점검

제13조(공간정보의 복제·출력 등 제한)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제 또는 출력할 수 없다.

- 1.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복제·관리하는 경우
 - 2. 비공개 공간정보는 시장의 허가를 받은 때
 - 3.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때
-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복제·출력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문을 적색으로 표시한다.

이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복제·복사할 수 없음

- ③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공간정보는 예고문 부여 등 보호대책을 마련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공간정보자료 복제·출력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④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복제할 때에는 공개 공간정보와 구분

하여 별도의 매체에 저장한다.

제14조(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사람이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① 공간정보 보호를 위하여 전산실 등 필요한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다음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출입 인가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비인가자는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은 후 안내를 받아 출입
 2. 무단출입 방지를 위해 출입문에 생체·카드 인식기 및 자동잠금장치 설치
 3. 모든 출입자는 출입통제 대장에 출입사항을 기록(단, 생체·자동인식기 등을 통한 자동출입기록으로 대체 가능)
 4.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통보될 수 있도록 상황전파체계 구축
 5. 비인가 카메라·휴대폰·휴대용저장매체 등의 보관 용기를 출입구에 비치하여 불법 촬영 및 자료유출방지
 6. 그 밖에 보호구역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공간정보의 외주용역)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외주 용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계약서에 법 제37조에 따른 공간정보 보호의무·법 제38조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 위반 시 조치사항 명시
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
3.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

4. 용역 종료 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자료회수 및 파기

5. 기타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②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의 외주 용역 시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비밀취급인가특별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공간정보를 외주 용역할 때에는 미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공간정보 수집·제작 현장사무소 포함)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외국인 보안관리) ① 외국인을 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신원 확인·신상기록부 작성·유지, 보안교육 및 서약 집행
 2. 계약서에 기밀 누설·유출 시 해고 및 손해배상 책임 명시
 3. 비공개 등 중요 공간정보 취급 및 보호구역 출입 차단대책
- ②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외국인에 대한 보안상 유해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먼저하고, 시장에게 보고 후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공간정보를 안전하게 보호·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은 별표2 와 같다.

제5장 공간정보 공개 요건 및 절차

제19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요건) ①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기관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승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확인·검토하여야 한다.

1.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신원사항
2. 소속기관·단체 및 직책
3. 사용 목적 및 타당성
4. 활용 후 관리대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시장은 제공일시, 자료의 내용 및 방법 등 관련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인수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0조(비공개 공간정보의 공개요건) ① 비공개 공간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자료의 내용과 공개 목적·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공개 공간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재분류) ①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②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는 「보안업무규정」 제15조에 따라 재분류한다.

제6장 공간정보의 보안지도 및 보안사고 조치 등

제22조(보안지도) ① 시장은 국가정보원장, 행정안전부장관 및 강원도지사에게 공간정보 보안관리에 필요한 협조 및 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보안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본청 및 소속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2. 공간정보 관련 제도 또는 조직이 변경된 때
3. 공간정보의 유출·침해 등 보안사고의 빈발로 새로운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할 때
4. 그 밖에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②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 행정안전부장관 및 강원도지사의 보안지도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본청 및 소속기관의 공간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공간정보 보안 관련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제23조(보안점검) ① 시장은 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보안점검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보안교육) ① 시장은 공간정보업무 취급자를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공간정보를 새로 취급하게 되는 사람과 전출·퇴직자가 있는 경우에 보안담당관 주관으로 실시한다.

제25조(보안 사고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는 지체없이 사고일시·장소·내용 및 사고 유발자 인적사항, 조치내용 등을 지체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누설·유출·침해·훼손·분실
2. 법 제37조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침해·훼손·무단 이용
3. 법 제38조의 비밀의 누설·도용
4. 공간정보 유통망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
5. 기타 공간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②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③ 국가정보원장의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보안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제1항의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보안사고 관련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른 조치 및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6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
2.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3.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4. 연도별 보안업무 수행지침
5. 그 밖에 공간정보 보안업무 관련 법령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간정보 등급 분류기준

공간정보	등급	분류기준
항공사진	비공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 지역 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공개제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삭제된 흔적이 남아있는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 2차원좌표(經·緯度)가 포함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자료 ○ 3차원좌표(經·緯·高度)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
	공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항공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은 건물·토지의 소유자와 법 제2조 4항의 관리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 또는 판매하고, 인적사항 및 사진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단, 올림픽 등 국제행사 지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행사기간 동안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을 일반인에게 제공 또는 판매할 경우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위성영상	비공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 지역 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위성자료
	공개제한	○ 정밀보정된 2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자료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해상도 4m보다 정밀한 자료 ○ 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
	공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위성영상 및 3차원 위성자료 ○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 이외 지역의 자료(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단,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 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 기록유지
전자지도	비공개	○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포함된 지도
	공개제한	○ 군사지도 ○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 시설이 포함된 지도 - 국가공간정보체계기본계획에 의한 7대 지하시설물 ·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송유관, 지역난방 - 아래 시설물이 표기된 수치지도 · 전력 : 발전소, 변전소, 지상송전선, 송전탑 · 통신 : 이동전화기지국(중계기 포함), 통신선로(지상 및 지하), 위성송·수신센터 · 상·하수도 : 저수탑, 취수탑, 급수탑, 수문, 댐, 지상상수관, 지상용수관.

		양배수장, 정수장, 펌프장, 취수장, 가압장, 하수종말처리장 기호 · 가스·송유관 : 지상가스관, 지상송유관, 저장소 · 맨홀 : 공동구맨홀, 송유맨홀, 가스맨홀, 전기맨홀, 통신맨홀, 전화맨홀, 기타맨홀(지형코드상의 기능이 미확인된 특정한 맨홀) · 특징전물 : 교도소, 구치소, 가스공사지사 등 통제기능을 가진 지사 및 공급관리소 · 기타 관 : 기타 수송관 ○ 단, 항공기·선박의 안전항행 등에 필요한 전력·통신·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지도에 표기 ○ 1:1,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과 표고점
	공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지도 ○ 인터넷·네비게이션·휴대폰 등을 통해 좌표와 1:5,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표고값 표시 불가
해양공간정보	비공개	○ 접경해역 수심 자료 ○ 좌표가 표기되어 있고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인근해역 또는 접경해역내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
	공개제한	○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120m보다 정밀한 수심 자료 ※ 단, 공개제한 대상 수심이라도 항해안전, 해양레저, 해양공간정보 산업화 등에 필수적인 해역의 수심은 관계기관 협의 후 공개
	공개	○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수심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해저 영상자료 ○ 해도, 전자해도 등
그 밖의공간정보	비공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공간정보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의 명칭 및 속성자료
	공개제한	○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 해상도가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3차원 공간정보 ※ 단, 해상도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 중 도로 지역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국가안보상 위해 요인이 없는 경우 공개
	공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기타공간정보 ○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3차원 영상자료 ○ 3차원 좌표가 있고 해상도가 90m보다 낮은 입체 영상자료 ※ 토양·지질·지반도, 도시·도로 건설계획도 등 ○ 도로명 사업에 따라 작성된 자료 중 보안관리 대상 시설, 시설명칭 및 시설명이 포함된 도로명 등을 제외한 도로명주소 안내도

※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은 각각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정하는 마에 따른

[별표 2]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1. 목적

이 계획은 전시사변, 폭동,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삼척시가 보관·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이하 “공간정보”라 한다)를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함으로써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삼척시가 생산·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공간정보

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

- 가. 전쟁, 사변 또는 폭동의 발발로 인하여 공간정보 등을 현 보관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게 된 때
- 나.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공간정보 등이 누설, 전과, 분실, 도난, 손실 또는 파괴될 우려가 있을 때
- 다. 적, 무장공비, 폭도 기타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공간정보 등을 탈취당할 우려가 있을 때
- 라. 기타 현 보관장소에 계속 보관할 수 없는 불가피한 또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때

4.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등

가. 일과 중일 때의 반출절차

(1) 상황파악 및 반출명령

보안담당관은 전 제3항의 상황에 따른 반출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의 반출명령을 받아 보관책임자에게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에 대한 반출을 명한다.

(2) 보관책임자의 반출조치

(가) 공간정보 등 반출요원 소집 및 반출지시

반출요원은 보관 부책임자 및 그 소속직원이 된다.

(나) 공간정보 등의 보관용기 개방과 인출작업

반출요원은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공간정보 등을 인출한 후 이를 비상반출낭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

(다) 반출

반출요원은 승강기 또는 비상계단을 통하여 공간정보 등을 반출지까지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라) 반출시 호위

반출시 호위는 각 반출요원 또는 지명 받은 보조요원이 행한다.

나. 일과 후 및 공휴일의 반출절차

(1) 상황과악 및 반출명령

당직책임자는 제3항에 따라 반출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각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 후 보안담당관의 명에 따라 비밀 등에 대한 반출을 명한다.

(2) 비상소집 조치(예비군을 포함한다)

당직책임자는 판단된 상황에 따라 전직원 또는 예비군에 대한 비상소집 조치를 취한다.

(3) 반출조치

(가) 안전함 개방, 보관용기 열쇠 및 다이얼번호 등 확인

당직책임자는 숙직실에 보관되어 있는 안전함을 열어 각 실·국과 보관용기 열쇠 및 다이얼번호를 확인한다.

(나) 인출조 편성 및 인출지시

당직책임자는 숙직자(수위 포함)로 구성된 인원으로 각 실·국과별로 분담한 인출조를 편성하여 해당되는 열쇠와 다이얼번호를 인계하여 인출토록 지시한다.

(다) 인출조의 인출작업

분담 받은 해당 실·국과의 공간정보 등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공간정보 등을 인출한 후 이를 비상반출낭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

(라) 반출

인출 또는 반출준비 완료와 동시에 비상계단을 통하여 공간정보 등을 반출장소까지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마) 반출시 호위

반출시의 호위는 우선 확보된 반출조원이 이를 하되 비상소집되어 도착한 예비군 또는 직원이 이를 호위한다.

다. 반출장소

(1) 상황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안전반출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2) 반출장소는 보안담당관이 이를 작성하여 안전함 내부에 비치한다.

라. 파기절차 및 장소

(1) 적, 무장공비, 폭도 기타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인하여 공간정보 등의 안전반출이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공간정보 등을 탈취당할 긴박한 상태가 야기되었을 때는 긴급 파기할 수 있다.

(2) 파기절차는 반출절차 제4항 가, 나에 준하여 시행하고 파기장소는 원칙적으로 소각장으로 하되 상황의 진척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삼척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별지 제6호서식]

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서(제19조제4항 관련)

신청인 신원사항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소속기관(단체)		직책			
요청자료						
사용목적 및 활용계획						
관리대책						
제공 내역	제공자료					
	제공방법					
	제공기간	~	반납여부		반납일	
	보안대책					

본인은 년 월 일 위의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음에 있어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며, 목적 외에 사용 시 아래에 규정된 처벌과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처벌
2. 제공된 공개제한 공간정보와 결과물·산출물 등의 회수 및 사용금지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삼척시 고시 제2018 - 74호

개간사업시행계획 (변경)승인고시

삼척시 하장면 용연리 산215번지의 개간사업 시행을 농어촌 정비법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06. 28.

삼척시장

1. 사업명 :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개간)

2. 사업시행자

- 주소 : 강원도 삼척시 **면 **길 ***
- 성명 : 권 * *

3. 사업내용

- 위치 : 삼척시 하장면 용연리 산215번지
- 지 목 : 임야
- 지적 : 71,603㎡
- 승인면적 : 22,452㎡
- 개간의 용도 : 개전
- 사업기간 : 승인일로부터 2019. 06. 30. 까지

- 부 칙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고시 제2018 - 75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물등의 신축(말소) 등의 사유로 부여(폐지)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06. 29.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강원남부로 890-34 외1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06. 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1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 산 88-14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강원남부로 890-34	20180629	건물신축	20090807	지역적 특성 반영	
2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상덕리 산 107-2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상로 430	20180629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도계리,상덕리) 복합활용	
3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번천리 84-11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두타로 446-120	20180629	건물신축	20090626	지형지물(두타산)명칭활용	
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738-14, 738-1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605	20180629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연결 구간으로기존도로명활용	
5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210-10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959-21	20180629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연결 구간으로기존도로명활용	
6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217-1, 218-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110-17	20180629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연결 구간으로기존도로명활용	
7	강원도 삼척시 갈천동 138-2	강원도 삼척시 새천년도로 626 (갈천동)	20180629	건물신축	20090626	동지역해안도로(기존도로명)	
8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07-1 (남양동)	폐지	20180629	건물철거	20090626	동지역중심부도로(기존도로명)	
9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곡리 24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곡길 76-18	20180629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10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107-5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3길 23	20180629	건물신축	20090626	일련번호방식행정구역명사용(덕산3길부기)	
11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삼거리 384-2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삼거리안길 312	20180629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지역위치복합활용	
1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금계리 144-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심방금계길 705	20180629	건물신축	20090626	지역지명(심방,금계)복합활용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2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항길 12-12	20180629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시설물(항구)복합활용	
		이	하	여	백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계	13 건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 산88-14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강원남부로 890-34	20180629	건물신축	20090807	지역적 특성 반영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상덕리 산107-2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상로 430	20180629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면(도계리, 상덕리) 복합활용	
부여	3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법원리 84-11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두타로 446-120	20180629	건물신축	20090626	지형지물(누타산)면적활용	
부여	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738-14, 738-1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605	20180629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 기존 도로명활용	
부여	5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반리 210-10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959-21	20180629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 기존 도로명활용	
부여	6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217-1, 218-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110-17	20180629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 기존 도로명활용	
부여	7	강원도 삼척시 결천동 138-2	강원도 삼척시 새천년도로 626 (결천동)	20180629	건물신축	20090626	동지역해안도로(기존도로명)	
폐지	8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07-1 (남양동)	폐지	20180629	건물철거	20090626	동지역중심부도로(기존도로명)	
부여	9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곡리 24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곡길 76-18	20180629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면사용	
부여	10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107-5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3길 23	20180629	건물신축	20090626	일련번호상식행정구역명사용(덕산3길분기)	
부여	11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삼거리 384-2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삼거리인길 312	20180629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 지역위치복합활용	
부여	1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금계리 144-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심방금계길 705	20180629	건물신축	20090626	지역지명(심방, 금계)복합활용	
부여	1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2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항길 12-12	20180629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 시설물(항구)복합활용	

삼척시 공고 제2018-514호

『삼척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5일

삼척시장

삼척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및 관련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법 조항 및 조례를 재정비 함
-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의 담장 및 건축물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보조금 지급 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조항 수정 (안 제2조제1항2호, 제2조제1항5호, 제2조제1항6호, 제2조2항, 제4조)
- 나.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운영비보조 규정 조항 삭제 (안 제3조2항)

- 다.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용자 조항 삭제 (안 제3조3항)
- 라.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주택(연립 등)의 담장, 대문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조항 신설(안 제3조4항)

3. 의견제출

- 삼척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 (교통행정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제출처 :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교통행정과(우 25914)
 - 연락처 : 삼척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 (033-570-3935)
 - F A X : 033- 570-3145

4. 그 밖의 사항

- 이 개정안은 삼척시청 홈페이지 (<http://www.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 2. 검토의견서 1부.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법 제8조 및 법 제13조와 관련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

제2조제1항제5호 중 “「도로법」 제43조관련”을 “「도로법」 제66조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를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0호”를 “제1항제7호”로 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관리

제3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삼척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라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재정법」 제112조”를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제3조”로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세입) ①이 조례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제2조(세입)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8조제1항과 관련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2. 법 제8조 및 법 제13조와 관련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
3. 4. (생 략)	3. 4. (현행과 같음)
5. 법 제30조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및 「도로법」 제43조관련 주차목적의 도로 점용료	5. ----- 「도로법」 제66조관련 -----
6.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액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②제1항제10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 연도에 정산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7호----- ----- ----- ----- ----- -----
제3조(세출) 이 삼척시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제3조(세출)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 보조	2.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관리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	<삭 제>

<p><u>용의 보조 및 용자</u> <신 설></p> <p>4. (생략)</p> <p>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재정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p> <p>1. ~ 3. (생략)</p>	<p>4. 삼척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라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p> <p>3. (현행 제4호와 같음)</p> <p>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제3조-----</p> <p>1. ~ 3. (현행과 같음)</p>
-------------------------------------------------------------------------------------------------------------------------------------------------------	---------------------------------------------------------------------------------------------------------------------------------------------------------------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 제명 : 삼척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의견 제출자 :

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18 - 523호

삼척시 금고 지정 공고

『삼척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19.01.01.부터 2022.12.31.(4년)까지 삼척시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 이에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8일

삼척시장

- 1. 지정금고 : NH농협은행 삼척시지부
- 2. 회계구분 : 단수금고(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 3. 약정기간 : 4년(2019. 01. 01 ~ 2022. 12. 31)

삼척시 근덕면 공고 제2018-6호

도로의 지정·공고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79-3번지 외 1필지 상에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용도의 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변경:1차)신청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하고자 합니다.

2018년 6월 26일

삼척시장

- 도로의 위치 :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79-3, 79-6
- 도로의 현황 : 길이 : 72.60m, 너비 : 6.0m, 면적 : 436㎡
-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부상 면적	제외 면적	지정 면적	
근덕면 장호리	79-3	임	4,041	3,743	298	장** 이**
근덕면 장호리	79-6	대	349	211	138	장** 이**